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8. 9. 18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8. 9. 1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개편과 법개정으로 위임사무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임현황

- 현 행 (65종 209건) → 조 정 (73종 219건)
- 증 감 : +8종 10건
 - 폐지 : △11종 39건, 규정→조례 : 14종 33건, 규칙→조례 : 2종 7건,
 - 조례(동장) → 조례(구청장) : △1건, 신규(구청장) : 3종 10건

○ 기구의 명칭 변경

- 감사담당관실 → 감 사 실
- 공업진흥과 → 기업지원과
- 시 민 과 → 시민복지과
- 여성정책과 → 여성복지과

○ 신규 위임

- 시장 → 구청장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총무과)
 - 건축물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건축과)
 - (가설건축물신고서 수리,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등)
 -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등(녹지공원관리사업소)
 - 민방위기본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민방위재난관리과)
 - 오수정화시설 부적합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청소사업소)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 등(여성복지과)

○ 위임에서 삭제한 업무

• 시장 → 구청장

- 지방세에 관한 권한 등(세정과)

-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권한 등(농산유통사업소)

- 가격표시업소 지도 육성(지역경제과)

• 시장 → 시의회 사무국장

-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진보

○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조정한 사무

• 시장 → 구청장

- 비료판매업에 관한 사항 등(농산유통사업소)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기구 명칭이 바뀌어짐에 따라 별표 중 사무의 구 위임 사항 중에서 성과소관에 있는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수정하는 데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36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21

제 출 자 : 총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천시농산유통사업소설치조례안이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로 기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농산유통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별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 중 실과소별란에 농산유통사업소를 → 농산지원사업소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위임사항) 별표중 "농산유통사업소"를 "농산지원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농산유통 사업소	1.	가.	농산지원 사업소	1.	가.

[수정안포함]

부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동장 및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 동장 및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 이례적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감 사 실	1. 기강감사	가. 구 및 동에 대한 기강감사(정기, 수시)	·부천시자체감사규칙 제4조제3항
	2. 구·동 공무원의 문책	가. 처분이침, 자체조사 사항에 대한 문책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제6조(내무부훈령 제381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총 무 과	1.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진보 (직위부여권) 나. 5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진보 (직위부여권) 다. 구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 6급 및 7급은 가명부 →시명부에 통합) ·징계집행, 직위해제 ·승급, 휴직, 복직, 면직, 겸임, 시보해제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단, 8급→7급은 시장이 인원조정) ·대우공무원 선발 마.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징계집행,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회계직공무원 임명		·지방재정법 제112조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직 용
민 방 위 재난관리과	1. 민방위기술지원대	가.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3
	2. 민방위대 정기검열	가. 민방위대 정기검열(미워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0조
	3. 민방위교육 훈련	가.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민방위기본법 제34조제2항
지역경제과	1.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제5항
		나. 판매사업, 저장소의 사용(개사, 휴지, 폐지, 재개) 신고	·동법 제7조
다.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지위 승계신고		·동법 제8조	
라. 고압가스(저장소, 판매사업)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9조	
마. 위해방지 조치 신고(저장자, 판매자 또는 사용자) 등		·동법 제14조제2항	
바. 사업자 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동법 제15조제2항	
사.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동법 제20조	
아. 고압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동법 제24조	
자. 고압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가.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2항, 제7항 및 제5조
나.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동법 제3조제3항, 제7항 및 제5조		
다.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의 사용) 개사, 휴지, 폐지, 재개 등의 신고	·동법 제6조		
라.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지위 승계 신고	·동법 제7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마.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의 취소 등 바. 사업자 등과 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자(선임, 해임, 퇴직) 신고 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신고 등 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또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8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8조
시민복지과	1. 외국인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3. 요보호자의 생계 보조 4. 보호비용의 징수	가. 외국인등록표 작성 및 관리 나. 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생활보호법 제14조 ·생활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생활보호법 제39조

성과소별	위 입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5.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6.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	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및 지도·지시 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변경 또는 중지 등	·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9조 · 생활보호법 제21조, 제22조 · 생활보호법 제23조 · 생활보호법 제24조
	7. 취로사업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2조
	8. 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	가.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작성 보관 관리 나. 의료보호증 발급 다. 의료보호증 변경 확인 라. 의료보호증 재발급 바. 의료보호증 회수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7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9조
여성복지과	1. 아동보호	가.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 나.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조치 다. 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확인 및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 조사	· 아동복지법 제10조 · 동법 제12조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2. 보육시설	가.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신고 나.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의 변경신고 수리와 결과보고 다.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폐지, 휴지의 승인 또는 신고	·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라.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폐쇄 등 마. 청문의 실시 바. 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 사. 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 제29조
	3. 노인보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 상담 및 입소 조치된 자의 관리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감독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용 보조	·노인복지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항 ·노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4.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노인복지회관 제외)	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폐지, 휴지신고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라. 노인여가시설의 비용수납 및 청구 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보고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동법 제43조제2항 ·동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5. 경로연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 나. 경로연금지급대상자 관리 및 지원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노인복지법 제11조
문화체육과	1. 공연	가. 공연신고	·공연법 제14조
	2. 음반 및 비디오물 관리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증 교부 및 갱신교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라. 폐업 마. 등록취소 등 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 청문 아. 지도·감독 등 자. 판매·대여 금지조치 등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29조 ·동법 제14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환경위생과	1. 식품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식품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식품위생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나. 출입·검사·수거 등 다. 조건부 영업허가 및 취소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허가의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5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64조 ·동법 제65조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단, 시장의 권한 중 적용대상에 열거된 업종에 한함)	가. 시설기준 및 등급설정 나.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다.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공중위생법 제3조 ·동법 제4조 ·동법 제7조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p><적용대상>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및 제2호중 가목의 세탁업 나목의 위생관리 용역업 및 다목의 위생처리업과 동법제26조의 공중이용시설</p>	<p>라. 영업의 승계 마. 영업의 계속 등(휴업, 폐업, 재개업) 바. 출입·검사 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아. 폐기처분 등 자. 행정처분 차. 청문 카. 폐쇄조치 등 타. 과징금 처분 파.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하. 출입·검사 및 관리의 시정요구 등 거.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동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5조의2 ·동법 제26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44조</p>
<p>도 시 과</p>	<p>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행위허가 등</p>	<p>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10,000㎡ 미만, 녹지지역 제외) 나. 토지형질변경 등의 단속 다. 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범령위반공사 중지 및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명령</p>	<p>·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78조</p>
	<p>2. 개발제한구역관리</p>	<p>가.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판독 조치보고 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및 표석의 관리</p>	<p>·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2조, 제43조, 제46조</p>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p>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 아, 부, 수목 제4호, 제5호, 제5의2호, 제6호, 동조제3항)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제27호)</p> <p>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감시초소 설치</p>	<p>·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8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7조</p>
	3. 토지거래의 규제	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용도별 면적 이하의 신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4. 토지거래계약신고	<p>가.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수리</p> <p>나. 토지거래계약 신고시 계약체결의 증거, 기타 신고내용에 관한 조치의 권고 및 보고</p> <p>다.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p>	<p>·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3항 ·동법 제21조의8 제1항, 제3항 ·동법 제21조의14 제1항, 제2항</p>
	5.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p>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p> <p>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p>	<p>·동법 제21조의3 제5항 ·동법 제21조의14</p>
	6.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또는 열람	<p>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p> <p>나. 토지이용계획 열람</p>	<p>·도시계획법시행령제28조의2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14</p>

실과소별	위 입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도 로 과	1. 도로의 공사와 유지	가.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나. 도로의 공사 (12m 이하 도로의 신설에 관한 공사)	·도로법 제24조
	2.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가.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및 유지명령 나.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3.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가. 도로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동법 제31조
	4.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가.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33조
	5.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가. 비관리청에 대한 도로 공사시행 및 유지 허가	·동법 제34조
	6. 도로의 점용(굴착 및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포함)허가	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 나.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 다.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라.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마. 도로점용료의 감면 바.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제44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7. 도로개설의 토지 사용 또는 수용 (노폭 12m 이하)	가. 도로공사 시행 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동법 제49조의2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8.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가. 필요한 장소에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동법 제52조
	9.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가. 도로손괴자에 대한 수선 또는 유지비용	·동법 제67조
	10. 도로점용 공사비 및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 부과 징수	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공사비용의 예치 나. 비관리청 시행 도로공사와 유지비용의 부과·징수	·동법 제68조 ·동법 제70조
	11.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가. 법령위반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변경,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	·동법 제74조
	12. 도로의 무단 점용	가.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위임사항에 한함) 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수리	·동법 제80조의2 ·도로법 제86조의2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동법 제131조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동법 제131조제3항, 제4항
교통행정과	1.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사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2. 주·정차 단속조치	가. 불법 주·정차 단속 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다.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수리	·동법 제102조의2 ·동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동법시행령 제72조의3, 제72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3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3. 노상·노외주차장 관련 업무	가. 노상·노외(임시)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제외) 주차장의 관리 다.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제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마. 노외주차장 신고수리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 ·동법 제8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제9조 및 제14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제16조
건축과	1. 건축민원 등에 관한 사항	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당해 신청면적 및 층수를 기준으로 하고, 설계변경시에는 층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다. 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업무 라. 적용의 완화(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마.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바. 다른 법령의 배제(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아.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자. 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신고	·건축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8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법 제5조 ·건축법 제5조의2 ·건축법 제6조 ·건축법 제23조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제27조

실과소별	위 입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차. 건축물 대장 작성 및 관리 카.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다. 건축법 제2조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한 위치지정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단, 구 사무위임 건축물에 한함)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31조 ·건축법 제35조
	2. 건축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다. 행정 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라. 보고 및 검사업무 마. 과태료의 부과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단속	·건축법 제69조 ·건축법 제70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항 ·건축법 제74조 ·건축법 제76조 ·건축법 제82조 ·건축법 제83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3. 건축물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가. 건축신고의 수리 나. 가설건축물 신고서 수리 다.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5조제2항 ·건축법 제72조
	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입주자의 모집공고 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실과소별	위 입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농산지원 사업소	1. 농지전용 신고	가.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의 부지전용 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의 부지전용 다.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 용시설의 부지전용 라. 농지전용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동법 제37조, 제42조
	2. 농지 이용상황 등의 의 검사·조사	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및 이의 검사 또는 조사	·동법 제56조
	3. 종자매매업의 신고 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종자매매업의 신고 나. 영업취소·정지 다. 청문 라. 과태료 부과징수	·종자산업법 제13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10조 ·동법 제139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동법 제159조 ·동법 제176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31조
	4. 비료판매업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료판매업 신고 나. 비료판매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다. 비료판매업신고증 재교부신청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마. 판매영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동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동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동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녹지공원 관리사업소	1. 도시공원관리	가. 도시공원의 관리 (단, 구 관할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미시설공원) 나. 녹지의 관리 (단, 구 관할구역 내 녹지지역) 다.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단, 구 관리 어린이공원 및 녹지)	·도시공원법 제5조 ·동법 제11조제1항 ·동법 제8조 및 제12조의2
	2. 산림자원보호	가.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허가(신고)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다. 입산신고 라.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 마. 산지정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등 바. 주민동원명령 및 진화 사. 산불진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아. 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산림법 제90조 ·동법 제97조, 제99조 ·동법 제98조 ·동법 제100조제2항 ·동법 제100조의3 ·동법 제102조 ·동법 제102조의3 ·동법 제125조
	3. 야생조수보호	가. 유해조수 구제허가 나. 포획한 조수의 신고 다. 조수 인공사육 허가(신고) 라. 박제업 등록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동법 제21조제4항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실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청소사업소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단, 법 제7조 및 제15조제2항에 한함)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42조, ·동법시행규칙 제67조, ·부천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11조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	가.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 정화조의 설치 나.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 운영관리, 개선명령 다. 간이 오수정화조 설치 라.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마.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사.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관리 아. 기술관리인의 신고 및 가축사육의 제한 등 자. 오수정화시설 부적합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동법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동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4조제4항, 제26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3조의2 ·동법 제34조, 제42조 ·동법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2. 동 위임사항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세 정 과	1. 당해 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자 수입 징수결정 나. 불용품 매각대 징수결정	·재무회계규칙 제4조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부 과 2 과	1. 지방세고지서 발급 및 송달		·지방세법 제51조의2 동법시행령제39조의2
징 수 과	1. 지방세 관련 재증명 발급		·지방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제20조, 제21조
시민복지과	1. 인장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신고 나. 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 다. 장부의 검사 및 질문	·인장업법 제3조제1항 ·인장업법 제3조제2항 ·인장업법시행령 제2조 ·인장업법 제7조
	2. 호적과태료에 관한 사항	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단,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출생, 사망신고를 하는 자에 한함)	·호적법 제132조의2
	3. 의료보호에 관한 사무	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나.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4.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요보호대상자 조사	·생활보호법 제17조 및 제19조

성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여성복지과	1.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화장, 개장신고 나. 매화장 및 납골 증명 다.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 제2조
	2. 모자가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의2
도 시 과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 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6호 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가설천막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4호 · " " · " " · " "
농산유통사업소	1. 농기계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계류 사용허가 및 취소 나. 사용료 부과징수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 제5조 ·부천시기계류관리조례 제6조

3. 시의회 사무국장 위임사항

성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총 무 과	1. 소속공무원 의회 임용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 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 · "